

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0. 2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「구미발갱이들소리」의 효율적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
- 위탁운영을 통해 전국의 무형문화재 단체와 연계,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존·전수 활동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 확보재산 】

□ 발갱이들소리전수관 신축 건물

- 위 치 : 구미시 지산동 107번지 일원
- 규 모 : 부지 3,520㎡, 연면적 1,215㎡(지상 2층)
- 건축가격 : 2,500백만원(설계가격 기준)
- 시 설 물 : 건물 1동

3. 운영보조금 : 연 80백만원

□ 운영보조금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공공요금	시 설 물 유지관리비	비 고
80	33	12	15	20	

4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(m ²)	필 지	면적(m ²)	
합계			1	1,215	7	3,520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1	1,215	7	3,520	전수관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용재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전수관 위탁시설 현황

구 분	시 설 물 내 역		비 고
건 축 물	1동/1,215m ²		지상2층
기 계 설 비	기계 · 전화 · 방송 · 소방설비(각 1식) 시스템냉난방기(1식) 등		
부대시설물			
관 리 · 운 영 물 품	운영물품	서가(책장10), 장탁자(2), 도서(3,000)	
	사무용품	사무책상및의자(4), 사무실책장(5), 응접셀(1) 컴퓨터(2), 프린트(1), 팩스(1), 민원의자 (10), 냉 장고(1),	

□ 위치도 및 조감도

위 치 도



전 수 관



관 련 법 령

◎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◎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는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◎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들소리 기능보유자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